

건강관리 카드 무엇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직업성질한 조기발견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발급해주는 카드입니다. ※ 카드 소지 시 연 1회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5에서 규정하는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연번 |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업무 | 대상 요건 |
|----|---|---|
| 1 | 베타-나프탈아민 또는 그 염(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 3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 |
| 2 | 벤지딘 또는 그 염(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 3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 |
| 3 |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 또는 베릴륨 함유물질(베릴륨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3퍼센트를 초과하는 물질만 해당)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 양쪽 폐부분에 베릴륨에 의한 만성 결절성 음영이 있는 사람 |
| 4 |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5 | 가. 석면 또는 석면방직제품을 제조하는 업무 | 3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 |
|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1) 석면함유제품(석면방직제품은 제외)을 제조하는 업무 2) 석면함유제품(석면이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제품만 해당, 이하 다목에서 같다)을 절단하는 등 석면을 가공하는 업무 3) 설비 또는 건축물에 분무된 석면을 해체·제거 또는 보수하는 업무 4) 석면이 1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제(耐火被覆劑)를 해체·제거 또는 보수하는 업무 |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 다. 설비 또는 건축물에 포함된 석면시멘트, 석면 마찰제품 또는 석면개스킷제품 등 석면함유제품을 해체·제거 또는 보수하는 업무 |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 라. 다목 또는 다목 중 하나 이상의 업무에 중복하여 종사한 경우 | 다음의 계산식으로 산출한 숫자가 120을 초과하는 사람 : (나목의 업무에 종사한 개월 수) × 10 + (다목의 업무에 종사한 개월 수) |
| |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정한 종사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흉부방사선상 석면으로 인한 질병 징후(흉막반 등)가 있는 사람 |
| 6 | 벤조트리클로라이드를 제조(태양광선에 의한 염소화반응에 의하여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7 | 갱내 또는 옥내에서 하는 분진발생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5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별표 25] 너.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발전소에서 발전을 위한 공정[하역, 이송, 저장, 혼합, 분쇄, 연소, 집진(集塵), 재처리 등의 과정을 말한다] 및 관련 설비의 운전·정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의 작업 |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흉부방사선 사진 상 진폐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관리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외) 다만, 너목의 업무에 대해서는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
| 8 | 가. 염화비닐을 중합하는 업무 또는 밀폐되어 있지 않은 원심분리기를 사용하여 폴리염화비닐(염화비닐의 중합체)의 현탁액(懸濁液)에서 물을 분리시키는 업무 나. 염화비닐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석유화학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업무 |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9 | 크롬산·중크롬산 또는 이들 염(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을 광석으로부터 추출하여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10 | 삼산화비소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배소(焙燒) 또는 정제를 하는 업무나 비소가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3퍼센트를 초과하는 광석을 제련하는 업무 |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11 | 니켈(니켈카보닐을 포함한다) 또는 그 화합물을 광석으로부터 추출하여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12 |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을 광석으로부터 추출하여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13 | 가. 벤젠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업무(석유화학업종만 해당) 나. 벤젠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석유화학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업무 |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14 | 제철용 코크스 또는 제철용 가스발생로를 제조하는 업무 (코크스로 또는 가스발생로 상부에서의 업무 또는 코크스로에 접근하여 하는 업무만 해당) |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15 | 비파괴검사(X-선) 업무 |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연간 누적선량이 20mSv 이상이었던 사람 |